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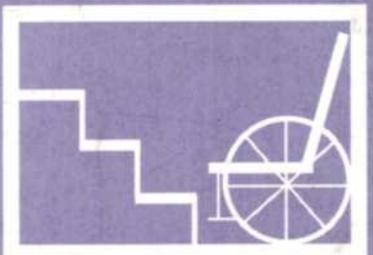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포지움

02) 364-8297
빨리 구출

성매매된 여성장애인의 상담 · 구조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사)경원사
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
담소/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재)성프란치스꼬 수녀회 젤렌의집



(우)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502호 / 전화 (02)3147-1505 (02)312-7245 / 전송 (02)364-4242
전자우편 uvep@cholian.net 홈페이지 www.han-sori.org

인권정보자료실
Mdl.40

일시 : 2003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 성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주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주관 :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 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포지움

●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
장명숙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매매 피해여성 장애인 시설에서의 경험과 한계
유마리아 수녀
(재)성프란치스꼬 수녀회 헬렌의 집(쉼터) 원장

● 성매매 방지법과 여성 장애인
박은경
경성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여성 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제안
조진경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심포지움

- 사회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인시밀씀 (이예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주제발표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 ----- 장명숙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장애인 시설에서의 경험과 한계 ----- 유마리아
(재)성프란치스꼬 수녀회 헬렌의 집(쉼터) 원장

성매매 방지법과 여성장애인 ----- 박은경
경성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제안 ----- 조진경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

Contents

Page	내 용
3	주제 1.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
23	주제 2. 성매매 피해여성 장애인 시설에서의 경험과 한계
38	주제 3. 성매매 방지법과 여성장애인
52	주제 4.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제안
72	참고자료1.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구출된 여성장애인의 사례
75	참고자료2. 성명서
77	참고자료3.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회원단체 소개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

장명숙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I. 시작하는 이야기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기고 글을 쓰며 여기에 하고싶은 그러나 다 못하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쓸 때마다 늘 겸허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다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와 늘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몇 주를 꽁꽁했습니다. 때로 일하는 활동가의 자리에서 제게 주어지는 과제들은 꼭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었던 것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도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어서 부족한 채로 이 글을 써야만 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심포지움 원고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준비위원회를 했고, 그 회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연대회의에 참석했던 각 단체에서 제공해 준 사례를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들어가는 이야기에 이어 장애유형과 추정장애인 수를 살펴보고, 여성장애인의 현실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실태로서 교육과·취업·결혼 그리고 폭력(가정폭력,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하여 접근해보고 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전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 글이 나누는 이들 서로에게 작은 파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 파장이 조금씩 넓어져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인식되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II. 장애유형과 추정 장애인 수

여기에 간략하게 나마 장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면 한다. 편의상 드러난 통계를 펼쳐보았다. 그러나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진 수많은 상황의 장애인을 생각할 때 그 절절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분명히 존재하면서 존재가치가 무시되어 있는 사회 그것이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일 것이다. 그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1. 국내의 장애 유형

기존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장애가 있었으며, 신규 장애유형으로 발달·정신·심장·심장장애가 신규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었고, 뇌병변장애가 신규 분리확대 장애유형으로 자리하며 전체적으로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 5가지 장애유형이 법정장애로 확대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유형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한다. 다양한 유형과 장애 인구의 증가 등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장애 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핵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정신적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적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2. 국내의 장애인 수

1) 국내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 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각 나라마다 전체 인구의 10%(그중 여성이 45%를 차지한다고 본다)에 해당하는 인원이 장애인이라고 평균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인구를 4천 5백만으로 볼 때, 전체 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고 그중 45%인 약 200만 명을 여성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5년마다 실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

애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449,496명으로 추정될 뿐이며 여성장애인은 559,064명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우리 나라의 장애인이 드러난 수 보다 더 많은 수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수치다.

2)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원인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선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암도적으로 후천적 원인이 매우 크다. 그리고 출산시 원인과 미상인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이로 인해 유전으로 인한 장애도 극히 미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애인부부가 장애 아동을 출산한다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결과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성별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을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적게 나타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장애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며 특히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사고 등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비율이 44.8%에 불과하여 타 장애유형에 비해 좀 다르게 나타남을 본다.

〈표 2〉 재가 장애인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선천적 원인	1.7	2.5	3.4	6.0	14.3	23.8	4.3	3.4	4.4
출산시 원인	0.6	4.1	1.1	1.4	10.5	12.2	0.0	0.8	2.3
후천적 원인	96.3	91.6	92.2	84.7	61.4	44.8	93.6	95.8	89.4
미상	1.4	1.8	3.3	7.8	13.8	19.2	2.1	0.0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제외

〈표 3〉 성별·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단위: 1/100건)

연령별	성별		계		남		여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0 ~ 9세	41,852	0.60	25,541	0.70	16,311	0.50		
10 ~ 19세	62,819	0.89	42,630	1.16	20,189	0.59		
20 ~ 29세	96,228	1.37	67,506	2.10	28,722	0.76		
30 ~ 39세	193,100	2.26	128,460	3.02	64,640	1.51		
40 ~ 49세	242,577	3.39	168,466	4.59	74,111	2.13		
50 ~ 59세	238,458	5.25	159,352	7.02	79,106	3.48		
60 ~ 69세	284,108	8.46	168,382	11.15	115,726	6.26		
70 ~ 79세	198,339	11.61	99,543	15.96	98,796	9.11		
80세+	92,013	15.50	30,550	17.9	61,463	14.5		
계	1,449,494	3.09	890,430	3.86	559,064	2.34		

3)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기 출현 연도가 다르지만 미국과 호주, 독일, 일본 순으로 출현율을 보이며 우리 나라는 2.35%(1995)로 그 출현율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4〉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단위: %)

구분	한국 (1995)	한국 (2000)	일본 (1995)	독일 (1991)	미국 (1995)	호주 (1993)
출현율	2.35	3.09	4.8	8.4	20.6	18.0

자료: 한국장애인복지지체육회, 『장애인부수화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1999

III. 여성장애인의 현실

I. 여성장애인과 교육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1998년 12월에 선포되었으며 헌장의 제 1조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5조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 장애인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남성장애인 및 일반인과 비교해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구 분	장 애 인		일 반 인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초등이하	67.8	41.4	35.0	17.8
중 학 교	11.1	16.1	17.1	14.2
고등학교	15.3	29.5	34.8	41.4
대학이상	4.2	11.2	13.1	26.6
비 해 당	1.6	1.7	-	-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인구 대상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계급별로 차이가 있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67.8%인데 비해 일반 여성은 35.0%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반 여성에 비해 약 18%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교 이상에 있어서는 4.2%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장애인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적나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에서의 차별과, 여성과 남성의 교육에서의 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다.

교육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학력과 학벌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에서의 소외를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달리 존재하는데 그것은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것으로 ‘검정고시’를 들 수 있다. 살면서 이미 일반적인 교육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지만 자조 모임을 통하여 혹은 뒤늦게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혹은 주위의 권유로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

삶의 일반적인 단계에서 보면 많이 벗어나 있는 듯 하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타협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하며 그럼으로써 존재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다르게 접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접근과 올바른 모색을 위한 과제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언제든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평생교육원 등)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조기 통합교육의 실시가 국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장애인과 취업

위의 교육문제에서 보았듯이 여성장애인의 학력이 67.8%이다. 이는 실제로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정 학력을 지녔다고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미 지니고 있는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여 취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은 많은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직업 훈련과 또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장애인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채은하 1996). 우리 사회가 여성장애인에게 가한 교육의 차별은 여성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억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취업을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취업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고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처절한 삶을 살아간다.

취업을 하여 일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힘이며 활력 소가 된다.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의지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도 차단되어 차별당하는 여성장애인에게도 이러한 삶의 나날이 주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앞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여성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장애인 할당제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고용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

〈표 6〉 재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취업률 (단위: %)

교육정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체
취업률	21.7	35.8	37.7	44.2	53.3	41.0	69.0	3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표 7〉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재가 장애인			전국민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참가율	19.5	43.5	34.3	48.3	74.0	60.7

자료: 재가장애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전국민: 통계청, 「2000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3. 여성장애인과 결혼

현대의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가부장제 남성의 성문화 속에서도 조금씩 스스로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자리는 결혼이 필수도 선택도 아닌 단지 여성장애인이라는 드러난 조건에서 엄청난 힘겨움을 다시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의 발달단계를 생각할 때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결혼은 필수와 선택 이전에 차마 넘볼 수 없는 길인 것처럼 삭제되어 있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의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요즘 자립생활이 서서히 대두되면서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모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남매들은 다 출가를 하고 부모와 함께 살게되며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 결혼한 남매들의 기피로 그 수발의 역할을 떠맡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결혼을 한 경우를 보면, 시가의 반대부터 부딪히며 어렵게 결혼에 성공하지만 그 이후 다가오는 억압과 차별 속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다. 2002년 「서울시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을 보면 응답자의 79.4%가 결혼(동거포함)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44.7%가 결혼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초혼연령이 20대 후반이 가장 많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의 평균 초혼 연령이 24.5세로 가장 낮고, 정신장애가 29.5세, 내부장애가 31세로 높은 편이다.

배우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은 38.6%이며, 배우자와의 나이차이는 평균 4.8세이다. 배우자의 직업은 무직이 33.9%로 가장 많아 여성장애인 가구가 저소득 계층이 많은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73.5%가 결혼생활에 매우 또는 대체로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젊은 계층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장애인의 결혼했을 때 이어지는 임신 출산과 육아는 또 다른 장벽으로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 하겠다.

〈표 8〉 결혼상태

(단위: %)

결혼상태 구분	재가 장애인			전국민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미혼	10.3	18.8	15.53	25.1	35.1	30.1
유배우	44.2	72.2	61.5	60.0	61.3	60.6
사별	40.6	4.8	18.6	12.8	1.8	7.4
이혼	4.9	4.2	4.5	2.1	1.8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재가장애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전국민: 통계청, 「2000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4. 여성장애인과 폭력

1) 여성장애인과 가정폭력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족집단의 특징 중 하나로 폐쇄적 집단이라는 것과, 비형식적인 인간관계라는 것 그리고 외부사회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영역을 갖기 때문이며, 가족은 한 개인이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곳으로 그가 소속된 어느 집단이나 제도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고 차단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일반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아직도 인식의 부족으로 '한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회 곳곳에서 존재 가치조차 희미한 때로 없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리라.

때로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혹은 가족 성원에 의한 은폐로 혹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생의 대부분을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기에 알려지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들어온 가정 폭력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함으로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사례

가. 사례

〈표 9〉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사례

- 자신들이 낳은 여자아이가 뇌성마비 장애라는 것을 알게된 순간 버리기로 결심한 부부
- 교통사고로 중도장애가 된 아내를 외면하고 보란 듯이 외도하며 노골적으로 이혼하자는 남편
- 장애를 지닌 자기 딸에게 틈만 나면 욕설을 해대며 구타하는 부친.
-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람 노릇도 못 할 것이라는 어긋한 기대로 교육에 대한 차단과 사회성 강탈
- 장애여성이 결혼함으로 겪어야하는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 혹은 맹종 그 삶의 투쟁 현장들!
- 지나친 시선, 언어폭력, 무시, 무관심, 소외, 죄인취급, 주체적일 수 없는 자리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문제

가. 성숙하지 않은 사회 인식 성숙할 수 없는 가정

성숙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은 성숙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고 성숙하지 않은 개개인을 만든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인식은 여성장애인이 태어나 삶을 영위하는 과정 과정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나며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한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깔아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의존

폭력을 당하는 여성장애인은 그 폭력이 난무하는 집 외에 어디 갈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건 형제자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건 어디 마땅히 갈곳을 찾을 수가 없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녀가 벗어날 곳이라고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가정이다.

다. 소통이 차단된 바깥사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 드러나기 매우 어려운 원인!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편 및 형제 자매가 가장 많고 부모와 자녀로부터도 폭력을 다하며 내용은 언어폭력, 무시, 구타의 순이다. 대처방법은 참는 것이 대부분이며 사회제도적인 방법을 사용(상담소 이용, 경찰에 신고 등)하는데, 후자의 경우 젊은 계층과 학력이 높은 수록 많아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인식 및 교육수준이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가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은 여성장애인을 생존의 현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몬 것과 같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밑도 끝도 없이 혼매다가 그곳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여성장애인에 관한 폭력 중 우리 사회에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와 부모, 자원활동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새 천년인 2000년 한해동안 강릉의 K양 사건을 필두로 부산의 Y양, 김해의 K양, 장흥의 초등학생 자매 성폭력 사건 등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여성계, 장애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책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중의 하나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등과 함께 특화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 장애계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예산확보 등 이를 위한 운동이 '여연'과 '한국여장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 정부 예산 속에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상담활동 등에 대한 항목이 책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2001년 초 '한국여장연' 산하 서울·부산·대구·전주에서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가 개소되었으며 그해 장애 여성공감, 성남의 경원사회복지회, 충남의 지장협에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가 개소되어 그 첫해 7개의 상담소가 출발하였다. 그야말로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체계 마련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3년 현재, 전국에 12개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마련되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1)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2000. 8. 24),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주최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현황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된 성폭력은, 일반여성의 자리에서도 소수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 현주소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에 대한 성폭력의 상황이 장애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상담 건수가 분석²⁾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크게 부각되어 수면위로 떠올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문을 열게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활동은 정신지체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에 대해 성폭력에 크게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이며 그밖에 장애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제일 높으며 여성장애인은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동네 야산 등 평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발생빈도를 보면 1-2회에서 끝나는 예보다는 주로 수회 또는 수십 회를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후유증으로는 대부분 성기부분에 심한 염증과 처녀막 파열 등의 손상을 입고 임신하여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기도 한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공포감과 불안, 수치심과 환청 그리고 자살과 자위, 과잉 성행동, 자해, 공격행동 등이 나타나고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때 오히려 일터에서 먼저 해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 p14, 2002,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
한국여장연 산하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의 2001년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분석 자료.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리

가해자의 나이는 천차만별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가해자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여성의 성폭력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인습을 습득하며 살아온 그들의 가부장적 요소와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생각할 때 여성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다.

나. 낮은 신고율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신고율은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볼 때 약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폭력상담의 실제, 1955, pp60-61)

각 장애 유형별 신고 비율을 굳이 살피기 이전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웃이나 주변에서 인식하여 상담해 오지 않는 한 본인이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100%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를 지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이 떨어진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는 비친고죄법이 적용되고 있다.

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1997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조항에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제 6조 특수강간 등에 관한 조항에는 적용대상이 신체장애인만으로 되어있고 정신상의 장애는 빠져있다. 또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처럼 장애인관련 성폭력법안들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의 신고율을 낮게 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장애 영역별로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정신지체 영역에서 일부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갈길이 먼 것 또한 사실이다.

IV. 여성장애인과 성매매

여성장애인도 성매매? 설마?

그 설마? 속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위의 물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오래 전부터 회자되었다. 2001년 문을 연 필자가 일하는 상담소에도 성매매에 유입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을 상담하고 사건에 개입했었으며, 가해자가 재판을 거쳐 법의 심판을 받았었고 그 후로도 몇 차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상담을 접했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일반 여성의 성매매와 몇 가지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땡기며(?) 유입되는 일반여성의 성매매가 여성장애인에겐 없다.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달리 일할 곳 없이 떠돌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땡기며(?) 유입되더라도 100만원 15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팔려 다니며 약간의 돈을 더 받아 그전에 진 빚을 갚고, 화장품 사고, 몇 가지의 옷을 사고 나면 없어지는 돈, 다시 늘어난 빚을 짚어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간다. 그러나 주어진 몸의 조건 -외부장애를 지녔건 내부장애를 지녔건 그 장애가 더 악화된다 으로 인하여 너무 일찍 몸이 망가진다. 그러나 돈만 챙기는 업주는 그런 사정은 알 바 아니다. 긴급수혈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새벽까지 영업을 해야만 한다.

둘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유입되는 상황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요약해 보면 업주가 직업소개소에서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들은 헐값(상품으로 칠 때 그 가치가 떨어지기에)이기 때문에 업주들은 일부러 여성장애인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활동가들은 말한다. 그런가하면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혹은 못된 아저씨의 꼬임에 빠져서, 혹은 달리 갈곳이 없는 상태여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어 오는데, 돈을 주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힘들어 나가려고 했다가 업주의 무서운 손찌검 한번으로, 그 뒤로는 깍소리 없이 고분고분 일한다.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기에 더욱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즉 지역사회 속에서 분분하게 헐값에 성매매 되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인 경우가 있다. 단돈 천원만 주면 한 동네의 대개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녀의 몸을 살수가 있다. 아버지의 친구일수도, 이웃오빠일수도, 이장 아저씨일수도, 80대 할아버지일수도 있다. 동네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너 같은 여성장애인쯤이야! 더구나 천 원 돈도 줬는데 뭐!'

셋째, 채팅과 전화방 등으로 인한 여성장애인 성매매이다. 채팅과 전화방을 통하여 유인하여 성매매에 유입된다. 특히 학력이 낮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이러한 성매매의 노출에 가능성이 크다. 급격하게 변화는 사회·문화 속에서 방치된 여성장애인의 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새삼스럽지도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도 않다. 없는 것처럼 은폐되어 왔을 뿐이다. 그것에 대한 사례를 보면 과제를 나눠보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사례

지역	장애유형	성매매 유입경로	현재상황
충남	정신지체 3급	성폭력으로 성에 노출됨 성매매로 유입	상담소에서 개입 중
서울	정신지체 3급	후견인으로 행사하는 남자 로부터 유인 성매매에 유입	보호시설 거주
성남	지체장애 5급	가정형편이 어려워 티켓다방으로 유입	보호시설 거주
성남	정신지체 3급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출 성매매로 유입	보호시설 거주
성남	정신지체 1급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함 무료전화 채팅으로 성매매 로 유입	상담소에서 개입 중
강원도	지체장애 (비등록)	극빈한 생활고로 티켓다방 으로 유입	경찰에서 계류 중

드러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례 중 일부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하여 그리고 극빈한 생활고와 채팅, 심지어 돌보아 준다는 후견인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수없이 자행될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관한 현주소다. 어느덧 수없이 드러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분명한 진실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수치나 통계가 없다. 수많은 자료들로 통계화 되어 드러나 연구되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드러난 통계보다 더 많은 수치의 삶이 은폐되어 있다. 소수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비상구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여성장애인 폭력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국가간 인신매매피해자 등은 본인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간주하는 국제 협약이나 다수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적 인 약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들을 고용·착취하는 알선 등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찬진 변호사)'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개정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유아무야 되었던 성폭력의 현황들이 사전화 되고 전국각지에 판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도 설치되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일을 해야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악조건으로 인하여 빙곤으로 내몰리게 한다. 사회적 소수로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공유되는 사회적 차별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무시되어 듣는 언어폭격이 있고,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성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종종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단지 여성장애인에게 받아야 하는 차별들이다. 정부주도로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연구되어야 하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가.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나.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 라.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인식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 마. 여성장애인을 위한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 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V. 나가는 이야기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성매매에 대하여 글로 쓴다는 것은 처음부터 힘겨웠습니다. 다 담아낼 수 없는 사회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더욱 방치되고 숨겨진 현실을 어찌 다 표현할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문제점을 토해내고 고민과 서로의 힘을 개발해내는 다양한 형태의 외쳐져야 할 목소리입니다. -삶의 소외·성장과정에서 가족, 교육, 친구, 취업, 결혼, 비혼, 결혼이후의 목소리, 황혼의 목소리, 꿈 등등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사회에 외치는 목소리 등등-

자신도 모르게 선택된 자리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자들이라고 봅니다. 다수의 이익으로 자리 매김 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면서 같은 여성의 자리에서 먼저 느끼는 공감대와 여성장애인으로 느끼는 더없이 높고 견고한 사회인식의 벽에 대하여 분노하며 때로 한없이 소진되는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이미 규정지어진 사회의 거대한 체제 앞에 무기력을 느끼더라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당당한 인권을 위해서!

여기에 같은 여성장애인으로 그리고 여성장애인 현장에서 일을 하는 활동가로, 그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기성찰(내공 또는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다)을 담보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은 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사회에서 거론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어 온 여성장애인의 자리가 자꾸자꾸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라며, 통계에서 제외된 비 통계화된 여성장애인들의 처절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으로 의견을 주신 '여성장애인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준비회의를 이끌었던 분들의 고견으로 모아진 글입니다. 여성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된 이 뜻깊은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아픔을 분노를 함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사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의지로 걸어온 길 계속 걷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여성공감(2003), 「장애인여성의 시선으로 당신과 나누는 공감 여섯번째」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2003),
「성매매 방지법 쟁점 해소를 위한 간담회 자료」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0),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마련」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 토론회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시설에서의 경험과 한계

유 마리아

(성프란치스꼬 수녀회 헬렌의집)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들어 본 적도 없던 일로써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으며 함께 그들과 살면서 긴 시간 함께 아파하고 울고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면서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폭력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리는 일들임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약한 인간들을 농락하고 있으며 떳떳하게 착취하고 약한 자들의 일생을 서서히 잔학하게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한 즐기고 나면 일단 그들을 자신들의 삶의 굴레에서 몰아내고 나서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되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로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다른 여성장애인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쉼터를 통해 본 입소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환경이야말로 세상 안에서 가장 버림받고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솔직히 주변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여성부조차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어떤 대책이 없다. 따라서 본 쉼터와 같은 여

성장애인인 보호시설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되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우리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과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쓴 글이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쉼터의 지원한계와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드러나고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되기를 기대한다.

1. 쉼터(나우리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본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현실

다음은 장애유형별로 실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성폭력 현실을 알아보기로 하자

* 정신지체

우리 쉼터의 경우를 보면 정신지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은 보통 간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면에서 서너살 수준으로써 항간에서 바보취급을 받아오면서 학대와 지독한 폭력 속에서 살아 왔기에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그만 익박지름이나 큰 소리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로 대응하며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일상생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상 1급, 2급이라면 대다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 쉼터 입소자들의 특징적인 것은 입소한 피해여성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입소자 대부분이 단 한번의 성적인 경험이 있었더라도 아주 깊이 인지되어 있어 끊임없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관계를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신지체 피해여성은 외관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힘들고,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이용을 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피해여성은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보다

는 그 상황을 따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해자로 오해되거나 악용되기 쉽다.

우리 쉼터에 한 피해여성의 예를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같은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남학생들의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의사표현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해자로 지목 받을 가능성 아주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 피해여성은 학교에서 내몰리고 일상은 비참한 상태 그대로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경우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현장으로 팔려갈 수 밖에 없고 어느 순간 포주들의 말을 잘 듣는 성매매 여성이 되어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꾸준히 보완해 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안에서 표현능력을 배양하는 일상생활 훈련을 겸한 자활자립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 정신질환

정신질환의 증세들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나우리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터득했다. 우리집을 거쳐간 꽤 많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상자들은 반사회성 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를 가진 이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신지체와 간질을 겸한 경우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1차 장애+2차 장애+3차 장애)

이들의 공동체 형성능력은 거의 없고 파괴자역할의 주범이 되었으며 어떤 다정한 말이나 표현도 왜곡되어 입력되고 모든 것을 반대로 말하거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아주 나쁘게 표현하므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많은 불란을 가져왔다. 정신지체인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좀 쉬운 일이지만 다양한 정신장애자들이 포함될 경우 약한 자들을 이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자신만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있어 정신지체인들은 좋은 희생물이 될 뿐이었다. 근친이나 가까운 이들에 의한 성폭력과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2차적 증상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토킹, 도벽, 거짓말, 약물남용, 가족문제, 충동조절 장애 등이다. 처음에 우리 쉼터 운영팀에서는 명상치료를 중심으로 시일을 보내고 약을 꾸준히 복용시키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는 쉼터에서 치료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전문적 치료만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장혜택을 받게 되어 병원에 입원시킨 사례가 두차례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리 쉼터에 입소한 대부분이 피해자들도 오랫동안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장애인이기도 하다.

*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은 성폭력피해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정신지체인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사례가 많지 않다. 지체장애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능력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기에 좋지만, 성폭력 후유증은 분명히 나타나고 성폭력피해시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그 후유증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우울증, 정신분열 현상, 환청 환시에 시달리거나 꼭 불을 켜 놓아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것, 깜짝 깜짝 놀라는 것 등... 그러나 이런 고통을 프로그램을 통해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보면 이후에 직업이나 학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체장애 피해여성들은 공동체를 주도해 나갈 수 있고 서로의 상부 상조 정신을 키워 나가는데도 기여한다. 특히, 어릴때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온 피해자들 중에는 대인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들을 정신과와 연계하여 꾸준히 진행되어야 했다.

2. 공동체 안에서 본 몇몇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현실

다음은 본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 중에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례이며, 성매매 유입경로를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며 피해여성의 특성상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피해사례가 따로 연구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몇의 피해사례를 상담내용을 실는다.

* 미선이(가명, 20대)

미선이는 정신지체 2급으로써 엄격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와 폭력성이 강한 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미선이 아기일때 도박과 가출로 인해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라 미선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언니는 미선이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많으며 현재 가출 상태이다. 미선이는 어린시절을 살펴보면, 3살 때 보육시설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할머니에 의해 미선이의 머리가 물 속으로 쳐박히는 충격 등을 받은 후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된 것 같았다. 그 후 어머니의 도박과 가출 등으로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아버지는 두 딸을 데리고 살게 되었다. 언니에 의해 자주 매를 맞았고 가끔 멍하고 꿈속을 헤메는 듯 하며 환청, 가위눌림과 몽유병 증세가 있었다. 아버지가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였으며 그 와중에서도 딸들은 잘 키우고 싶은 욕구는 많았지만 언니가 가출하여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미선이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

미선이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업보다는 친구들과 만나 노는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성장한 후에는 미용기술을 익히려고 3년간 일한 경험도 있었는데 단순노동(머리감기기, 청소...)만 시켰고, 어쩌다 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있었으나 자신이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 이곳 저곳 공장을 떠돌다 다방을 거쳐 성매매 업소로 넘어가 일하게 되었고 상담소와 경찰 등의 도움으로 포주로부터 빚 포기각서를 받고 우리 쉼터로 왔다. 그런데 포기각서에 '빚을 진 것도 갚을 것도 없다'는 내용으로써 이 말에 숨겨진 내용은 정신지체인 미선이가 얼마나 고분고분히 그 업소의 모든 요구조건을 채워주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빚이 한푼도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정신지체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경우에 포주들이 다루기 쉽고, 이용가치가 많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영미(가명, 20대)

영미는 3살 때 머리에 유리가 박혀 뇌수술을 통해 박힌 유리들을 빼내는 등 큰 사고가 있었고 그 후에 소아마비 증상이 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끈질긴 재활훈련 덕분에 원발은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왼손은 마비증상이 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영미는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똑똑한 언니와의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중2때부터 반항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고 가출을 시도하여 주유소와 다방 등을 전전하다가 나이든 아저씨와 동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저씨로부터 버림받고 나서는 성매매업소까지 가게 되었다. 지체장애인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탈출을 도울 때 연계기관들이 쉽게 찾아 낼 수 있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항은 포주의 거듭된 세뇌와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번복된 진술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하루를 꼬박 세우고 나서야 급작스런 마음의 변화를 보였고, 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 윤주(가명, 3-40대)

윤주는 아주 어릴때 한 손에는 핫도그를 다른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이 덮힌 역에서 멀고 서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한 아주머니가 자신의 손을 이끌고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먹여주고 입혀준 후 어떤 할머니에게로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윤주는 그 할머니와 10년 이상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 할머니 집에는 할머니의 딸인 중증환자 김**가 있었는데 윤주는 17세까지 그 여성의 하녀노릇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윤주의 목에는 항상 개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신호가 오면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빨리 달려가야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증마비환자 김**가 용변을 옷에 보고 할머니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게 해서 할머니로부터 윤주를 야단맞게 했다. 할머니는 윤주에게 자주 폭력적인 구타를 했으며 주로 구두 뒤축으로 머리를 피가 출출 흐르도록 사정없이 때렸다고 한다. 할머니가 죽고 윤주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다방 등지에서 일하다가 빚이 많아지면서 군산 집결지로 팔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감금 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군산화재사건으로 잠깐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이후 다시 떠돌다가 장 파열로 병원신세를 졌고 병원비를 선

불받고자 노래방에서 일하려고 거리 신문의 광고를 보고 연결되어 간 곳이 성매매 업소였다고 한다. 업소에서의 생활은 핸드폰은 있지만 전화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핸드폰 사용시 감시도 심하여 목욕탕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에는 꼭 주방이모가 따라 다녔으며 잠을 잘 때에는 3층에서 자는데 언제나 2층 복도 문을 열어놓고 감시를 했다고 한다. 이후 감시가 심해지고 순천지역으로 팔아 넘긴다는 말에 두려워 114에 문의하여 경찰과 연계되었으며 여성단체들과 연결되었다.

3. 쉼터 안에서의 피해자의 변화과정과 지원

1) 프로그램 문제

우선 대상자가 입소하면 며칠 간의 안정을 취하게 한 뒤 산부인과부터 내과까지 진료를 끝내면 외적인 치료부터 한다. 그 후 임상심리 검사를 거쳐 장애유형별 분류를 하고 사례 관리를 하면서 성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에 들어간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호카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실제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자활자립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울증 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자조모임,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진행하고 화초가 꾸기와 레크레이션, 매일 꾸준히 지속되는 명상치료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식을 배양한다.

프로그램을 참조하면 차라리 여성장애인에게 몇 배로 많은 정열과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만 그들의 일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나라에서 나온 지원액의 항목을 보고 있노라면 '여성장애인은 아프지도 움직이지도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때가되면 조용히 퇴소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 세상의 누구도 다시 받아 주고자 하지 않는다.

퇴소 후의 피해자들의 사후관리부분을 심사숙고 해야하며, 재발방지와 공익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합류한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는 좀더 특별한 모임을 했고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선입견을 없애는데 노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전반적인 생활지도로서는 매일 일상적 생활지도로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거생활의 실제적 지도와 보조, 공공장소에서의 예의 범절과 사회생활의 지도 및 보조, 생명가꾸기로 정원 돌보기와 화초 가꾸기였다. 또한 주 5회 원하는 이들에 한해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5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과목별 대입검정고시, 꾸준한 명상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시로 정신과 병원과 연계하여 자조모임을 가지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부모와 연결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 숨을 튀어주기 위한 여행 및 영화관람 등으로 방향을 모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동체 내의 다른 장애인유형들 특히, 정신지체인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한 가족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세 사람 모두 처음 왔을 때는 의심과 불안, 초조감 등으로 극도의 신경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적어도 2주간 동안은 익혀진 습관 그대로 살았다. 예를 들자면 밥을 먹을 때도 한 그릇 속에 이것저것 양념문은 숟가락들을 꽂아두어 방치해 두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피해자들은 살아오면서 농락 당하고 폭력 속에 길들여져서 조용한 주위환경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처음엔 큰 부담감으로 다가가는 듯 보였다. 또, 생활습관이 밤에 주로 활동했고 어느 때라도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했으므로 야간에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기가 아주 힘들었다. 목소리가 아주 크고 시끄러우며 밤에 일어나는 충동성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켜주기 위해서는 보통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든지 불을 켜 놓게 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허락하면서 밤을 함께 지새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로운 응대가 필요했다.

7개월만에 이들중 두 사람은 두 번 가출하였고, 두 번 모두 심각한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 해결방법이었고, 충동성이 작용했으며,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이 좋아서 혹은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다시 도망쳐 돌아와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빠른 변화와 치유과

정을 보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처음 그들을 맞이해야 했을때 나름대로의 편견에 의해서 무척 서로를 경계했던 것 같다. 우선 질병문제부터 성병에 대한 미성숙한 개념, 다른 여러 가지 장애가 예상되는 불결함... 또한 인간의 존엄성 부분에서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이 치부되는 많은 점들; 그들의 가치관, 의식 변화의 어려움, 모든 것은 오직 충동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는 것, 정신적인 어떤 이상... 그러나 함께 살면서 보니 아주 보통 사람이며 그들에게 진실로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서 참다운 인관 관계, 진정한 우정, 성실한 참여 그것이었다. 사실 이들이 가장 크게 앓고 있는 문제로 나는 정신적 장애를 꼽고자 한다.

이것은 물론 2차적인 장애 즉 1차적 장애 때문에 환경과 자신에게서 생긴 장애로써 발전된 것이지만 수많은 정신 장애인들과 같이 자신이 부모에게는 실망거리 가족들에게는 부담거리 친구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 글에서 읽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진실로 염려하고 진실로 사랑한다고 믿기가 힘들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진실한 배려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실한 애정이고 무엇이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한지 예리하게 간파하는 민감한 감수성이 짙트게 마련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우리는 서로가 알게 모르게 그어놓은 경계선을 없애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느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나우리공동체 철학”을 도입하여 암기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명상의 시간을 1시간씩 가지면서 이것은 서로가 치료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의외로 이 프로그램을 빨리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쁘게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임상심리검사에 따른 신경정신과에서의 6개월에 걸친 자조모임은 서로를 알게하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히 대입 검정고시 시험준비를 했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의 힘을 좋은 곳으로 돌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한 가족으로써 이들에게 가장 어렵게 보이는 것은 성매매 생활동안 정당화 되어버린 타인에 대한 폭력이었다. 이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 부단한 주의가 필요했는데 어린이 대하듯 폭력적이거나 예모 없는 언행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그들 서

로가 발견해 내고 벌금을 물리거나 벌칙을 받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갇혀있다는 기분이 들 때인 것 같다. 처음에는 밤에도 안에서 거는 자물쇠는 없었고 채우지 않았는데 두 번 충동적으로 집을 나감에 따라 밤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했다. 이것이 크게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고 자연스러워 지기 위한 시간과 서로간의 신뢰형성이 요구되었다. 이들을 통해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이곳의 다른 장애인을 받아들이고 서로 도우며 다른 장소에 있을 때도 서로 염려하고 애틋이 챙겨주는 일들이다. 베드민턴을 치면서 재잘거리고 수녀원 주변을 뛰어 돌아 다니는 우리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행복이란 바로 이런것임을 새삼스레 느끼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알 수 없기에 오늘밤 그들이 도망을 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라면 아마도 곧 후회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제 곧 대두될 문제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있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약점으로 인해 퇴소 후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적으로 여성부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기에 일반여성처럼 6개월만에 혹은 퇴소하게 된다면 당장 그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다. 다행히 가족에게 돌아갈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또다시 예전 삶의 형태로 돌아가거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알고있기에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쉼터에 거주했던 피해여성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받아왔던 상처에는 아랑곳없이 새로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려는 지극한 열성과 나름대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려는 노력이다. 피해여성 모두는 우리 공동체에 합류한지 보름만에 몇 년 동안 하루 2갑씩 피우던 담배를 어려운 열성으로 끊어주었고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주변의 공동체 식구들 중 가장 약한 사람에게 보여주던 모멸감이나 폭력적인 언사들이 완전히 바뀌는 태도를 보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규칙적이고 성실한 습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는 점이다.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고 자신이 일하는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공동체 식구인 정

신지체가 있는 경우 그를 걱정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그에게 가서 보살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여성에게 가장 우려된 점이 성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미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경험한 것이 혹시 ‘죄의식 없음’이나 ‘성을 즐기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은 지나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요당하면서 해 왔던 성매매 자체에 대한 증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여성의 인권문제는 남성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있으며 그들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니, 여성장애인은 성매매에 포함되어 있다니,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하고 놀라거나 기사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쾌락주의로 불러온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난 후에 눈과 입으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운영상의 문제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전무했다. 정부나 사회, 가정에서 여성장애인은 골칫거리였고 쉬쉬하는 존재였으며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는 존재였다.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은 오직 피해자일뿐이며 그들이 받는 댓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법적으로 일정정도 보호받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여전히 부족할 뿐만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은 누구도 보호해 주거나 도와주려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하면서 정부나 사회가 법적인 어떤 보호조치나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성부에도 자료화 된 것이나 여성장애인을 배려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을 쉼터의 가장 어려움은 24시간동안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데도 종사자 인건비는 겨우 2명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장애인 10명정도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는 프로그램과 치료, 성폭력 법적지원 문제처리,

산부인과부터 정신과, 내과 등 의료지원, 주민등록증부터 의료보호카드,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학교문제 등 꼭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어서 2명중 적어도 한 명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일 처리에 있어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경리, 문서처리만은 꼭 1명이 있어야 되는 실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시설장1, 상담원1, 회계1, 취사원1)으로 보인다.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잘 알지 못하거나 장애인문제로만 바라보고 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시설 예산안 참조)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의 열악함은 참조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치료비만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비는 아예 보기에도 그럴듯한 이름뿐이다.

여성장애인에게 주거 공간과 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 건물 유지 문제를 빼 놓을 수 없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차원이 인권차원이라면 살기 위하여 최소한 얼만큼의 공간과 시설, 비용들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금방 나올 것이다. 여성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안을 참조 해 본다면 1년 예산이 한달동안의 난방비와 연료비에도 못 미치는 것을 바로 알아 볼 수 있다.(예산안 참조)

3) 향후 과제 및 전망

① 과제

- 현실적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초기단계에 지출되는 1인당 35만원 비용지원 힘든 상황(산부인과, 정신과 등) 이다.

본 쉼터의 재단재정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장애인 미등록시 지원비 등)이 있다.

현재 보호 인원에 따른 직원(24시간 근무)이 임용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부족으로 3명만이

근무하며 그것도 한 명의 인건비는 없다. 보통 경리를 맡은 사람은 경리 이외에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달에 한번씩 보고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 뿐만아니라 분기별로 각각 정산서와 보고서를 보고해야하고 적은 액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이지만 서류처리는 정말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인원에 속하는 시설장외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보통일상의 일처리에 있어 법률적 문제와 병원, 동사무소 구청등지를 다니기 위해서는 쉼터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돌 보아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이 모자람을 체험하고 있다.

ex) 장애아동보육시설에서는 아동 3명당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

- 성폭피해자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가정폭력이 선행한 후 성폭력으로 진행됨이 사례에 따른 공통점으로 도출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은 성폭력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며 단, 두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예외 규정의 필요성느낌(ex고령의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성폭력 피해자가 아이와 같이 입소하는 문제등)

- 장애 유형에 따른 사례별 Case가 다르다.

ex) 정신지체 2급이면서 지체장애인 중복장애, 영아 아동을 데리고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지체 피해여성인 경우, 정신지체인이 원조교제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고발되어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② 향후 방향과 전망

- 다양한 입소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향후 소식지 및 사례집 발간 준비가 필요

- 모든 내역들을 기록화 하여 상호 변화의 장이 필요(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자료가 없기에 더욱 필요)

- 현실적인 직업재활 필요

ex) 의식주 제공에서 머무르지 않고 복지관과 연계 또는 사후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제조,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립의지를 갖도록 한다.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Case에 따른 사례별 사항을 문서화하여 향후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Agenda 자료를 현장의 시각에서 제공 할 수 있다.

ex) 시설지원이 잘 되면 지방에 지부를 둘 수도 있고 쉼터들이 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방 및 인권개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퇴소 후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자립자조 여건을 강화 할 수 있다.

③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 및 지원적 한계

* 퇴행현상

나우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 아프지만 한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입소자들의 퇴행 현상을 목격하는 일이다. 대부분 정신장애를 지닌 입소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속적인 퇴행을 하고 있음을 보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따른 프로그램마저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날들이 그들의 앞길에 펼쳐져 있는데 별다른 희망과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픔이 따른다. 우리의 짧은 견해로는 * 정신장애인에 한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에게 의뢰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며 * 중증 장애인들을 성폭력 시설에서 돌본다는 것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입소자들이 나우리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가 따라야 하므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결과를 가진다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만다.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른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치유되어 가는 것을 예로 들자면 만약 정신지체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별히 전문화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인과 나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보완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

어서는 상호 작용에 의해 놀랄만큼의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 성폭력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이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까지 되는 일

사실 입소자들을 살펴 볼때 가해자라고 지목되어 나우리 공동체에 합류한 이들을 보면 대부분 정신지체 피해여성들이다. 함께 이들과 살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듯이 이들의 연령 수준은 유치원 이하의 수준으로 참으로 단순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 할 것이다. 이들을 보통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몰아세운 논리에 의해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자신을 변호할 아무런 힘도 없는 이들은 똑똑한 이들에 의해 가해자로 몰려 그가 살던 환경에서 쫓겨 나게 되거나 1000원이나 2000원, 혹은 과자를 사주었기에 따라갔고 그 이유로 성매매된 자라는 놀림과 구설수에 올리는 일들은 많은 것 같다.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분노가 일고 인간의 악함에 대항하게 되지만 참으로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정신지체 피해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 성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 사고력에 의해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쫓겨나거나 성매매된 자로 지목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매매방지법률(안)은 여성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한가?

박은경

(경성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I. 글을 시작하며

성산업에 여성장애인의 유입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기사(여성신문 713호)를 처음 읽었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다. '설마 장애인이(또는 을)...'라는 하나의 생각과 '도대체 누가...'라는 또 하나의 생각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장애인의 성산업에 유입될 수 없을 것이란 잘못된 통념이 내 속에서 내재화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산업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은 실로 잠깐동안의 충격이었다.

필자는 강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산업에 대한 논의를 꾀나 하였지만 단 한번도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에 대하여 그 가능성이나 심각성에 대하여 희두를 던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갑자기 7월의 시작일에 그 부끄러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전화를 받았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법을 공부한 몇 안되는 여자라는 이유로 발탁되었지만, 필자로서는 여태껏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지난 2002년 9월 조배숙외 85인의 이름으로 발의된 성매매방지법률안을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자의 몫이었다. 선뜻 하겠노라 하였지만 막상 다른 글들을 읽고 생각할수록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찌보면 사회의 다수의 시각으로 작성되어 다수를 그 적용대상으로 만들어진 그 법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글을 풀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가만히 법조항을 분석하고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느끼며, 그들의 성매매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찾아내어 글로 옮기기로 하였다. 우선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를 간략히 기재하고자 한다.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의 태도 및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성매매근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반갑다. 소위 성매매근절을 위한 '각개격파'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근절이란 외롭고도 지독한 싸움의 끝에 이르는 길이 보여지기를 바란다. 그 길이 있으리라 믿는다.

II. 여성장애인 성매매의 현실 -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1. 성매매 현장에의 여성장애인

<사례1>

2003년 1월 성남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구출한 장애인 여성 2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사는 실제로 성매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

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고민해왔던 사실의 공식적 확인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성매매 피해 장애여성은 모두 2명으로 한 명은 왼쪽 손과 발에 약간의 소아마비 증세가 있는 지체장애인이며,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이들을 상담한 (사)경원사회복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감금생활을 했고, 상습적인 폭력과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라이터와 젓가락을 이용해 화상을 입히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물론 분뇨까지 먹였다고 한다(이상 여성신문 713호).

<사례2>

“손님이요, 손을 (가랑이를 가리키며) 여기다 막 쑤셔 넣어서 이렇게 (손을 마구 휘저으며) 했다니까요. 그래서 피가 막 나고, 병원에 실려가 수술받았잖아요.”

아예 서지도 못해 물 한잔을 마셔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언니의 처지는 참 안 됐다. 평생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환갑 줄의 ○○언니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말도 매끄럽게 잊지 못했으며 간진증세까지 있었다. ○○언니를 데리고 있던 여자업주는 그를 가두고 그 사각의 방 안으로 끊임없이 ‘싸구려 손님들’을 들여보냈다. 화대는 고사하고 밥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업주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나 제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다 ○○언니에게 돌려 풀었으니 오죽 좋은 화풀이 상대였을까…(이상 엄상미, 2003).

2.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유입경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성매매의 피해자인 여성장애인들은 대체로 가정으로부터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에 노출된 후 가출하였다가 성매매로 유입된 경우가 보통이었다. <사례1>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의 따돌림과 집단 구타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 티켓다방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성남의 성매매 집결지로 오게되었거나, 신상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여성신문). <사례2>의 경우에는 부모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족 못쓰는 ‘더러운 시누이’를 보게되거나 떠맡게 될까봐 연락을 끊어버린 지 오래라고 한다(엄상미).

(사)경원사회복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언니와 생활하던 중 언니의 무관심과 질책으로 기출하여 귀가하기 싫어 무료채팅사이트를 통해 ‘재워달라’고 하여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정신지체 3급인 한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으로 성에 노출된 후 성매매로 유입되었다고 한다(장명숙).

여성장애인은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멸시와 폭언, 물리적인 폭력을 오랫동안 참아내야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은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오히려 돌아갈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곳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유입 원인

<사례3>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표(1993)에 의하면, 1992년 현재 16세에서 64까지의 노동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노동장애를 가진 남성들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여성: 33.8% 남성: 24.2%), 중증 노동장애를 가진 남성의 31.2%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대 반해 중증 노동장애를 가진 여성의 40.5%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홍성희, 2000).

<사례4>

하루 세끼 밥 먹게 해준 업주를 밥 짖던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라 믿고 한 평생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언니도 있다. …그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훌쩍훌쩍 성매매지역으로 나가면 ‘멸이’ 삼아 그 한 몸 받아주는 곳이 많았다. 성매매 현장을 조금 깊이 보면 ‘몸만 멀쩡했지 집이 어딘 줄도 모르는 어리숙’하거나 ‘정신은 멀쩡하나 제 발로 집을 찾아갈 수 없는 부자유’한 장애여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업주들 중에는 이들을 일부러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혈값이기 때문에 소개소를 이용해 사들여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엄상미).

이상 <사례3>과 <사례4>의 경우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빈곤과 경제생활 접근에의 절대적인 어려움, 성매매시장에서의 현실적인 이유 등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최근 성매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

속과 인신매매 등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 구속구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을 무겁게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인하여, 값싸며 도주의 우려가 적고 성매매에 대한 인지능력에 떨어지는 경미한 정도의 여성장애인인 성매매의 현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소리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체의 발족이 새삼스럽거나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이유이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가 확산되어 인권유린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의 근절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III.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 법규 정리

(1) 성매매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한 조항

현행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고 있다(제10조 2항). 또한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며(제11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제12조).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경우 장애인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에 특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한 경우 현재로서는 위 형법 조항에 따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 될 것이다.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강요·알선 등에 관여한 자의 처벌에 관한 조항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제288조) 및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은닉한 자(제292조)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4,6,8항, 이하 특가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제9조)에 따라 처벌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의 강요, 알선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이 있는 경우 형법, 특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제25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이라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

(1) 성매매방지법률(안)의 의미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 7월 미 국무부에서 우리나라를 인신매매가 심각한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인신매매 경유국이란 오명을 들게 되었고,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윤락녀들이 감금당한 채 윤락을 강요당하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 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 행위를 매개하여 이익을 누리는 중간매개체들이 다양화되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성매매행위를 공급하는 전 사회적인 다양한 매개체들의 확산방지 및 축소를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매개체 차단 및 퇴출'과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가장 큰 축으로 하는 2개의 법률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 지난 2002년 9월 11일 조례숙외 85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의 몰수·추징,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의 강요, 알선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원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매매행위자중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의 사생활보호와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한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행위자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한 기존의 선도보호조치를 폐지하고 성매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비판적 검토 - 여성장애인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 "성매매된 자"의 용어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2조 제3호에서는 ①성적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②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 ③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상태 ④외국인 여성 중 여권의 압류 또는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성을 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자를 "성매매된 자"로 정의하여, 이들에 의한 성매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여성장애인이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아직 그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장애인관련 법률들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 법률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장애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 기준에 약간 못미치는 현실적인 장애인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성매매의 특성 상 중증 장애인보다는 미약한 심신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조항은 장애인 등록여부 또는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안의 규정처럼 대통령령으로 성매매된 여성장애인의 범주를 따로 정할도록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장애를 가진 여성일 경우 성매매된 자로 정의하는 규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성매매된 여성장애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성매매 강요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와 장애인·외국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곤궁과 요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을 장애인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자와 같은 선상에서 보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장애인이 가지는 경제적 곤궁과 요보호자로서의 지위 및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라는 보다 극심한 고통을 비장애인 여성 성매매에 대한 강요의 기제와 동일하게 파악하고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듈다.

동조항의 취지가 곤궁한 지위에 있는 자의 성매매강요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있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곤궁 정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경제적 곤궁이외에 다수의 억압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강요자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 위치를 달리하여 성매매강요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가중처벌조항의 마지막에 ⑥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의 항에서 정한 형의 일정부분을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다. 성매수자의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6조 ①항에서는 성매매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윤방법의 쌍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③항에서는 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정을 알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16조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성을 파는 자가 자수하거나 동법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초범의 경우) 감면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성매수자가 자수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성을 파는 자 또는 성을 팔고자 하는 자를 소개하거나 사후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자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공급한 자의 자수와 신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함을 알 수 있다. 신고자나 자수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두는 이유는 고도로 은닉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전달체계를 “내부비리 제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노출시켜 형사수사절차를 촉진하고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수단일 것이다(조영숙, 2003).

그러나 성매수자의 자수나 신고에 대하여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성매수자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성매수자의 경우 성매매현장과 업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수나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된다. 또한 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한 처벌만을 무겁게 하고 자수나 신고시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현행 법률안의 규정은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더욱 은밀하게 방치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의 자수나 신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릇 가중처벌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규정도 함께 두는 것이 형평

성에도 부합할 것이다. 사실상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스스로 자수하거나 신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성매매현장을 경험한 자의 자수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13조에서는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 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 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출석하기 전에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특히 신고자 등이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범죄의 신고인이 되기도 어렵지만 설령 신고자가 되어 증인신문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가 출석하기 전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의 <사례1>의 경우 피해자는 5~6세 정도의 지능으로 성매매나 구타란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했다(여성신문).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가출하여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보호자가 동석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렵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담소나 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원을 동석가능한 자로 명시하여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 조항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률안) 제5조에서는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일시지원시설, 중장기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재활지원센터를 둘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지원시설의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이용희망자와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23조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고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숙식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한편 성매매알선처벌법률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성매매된 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성매매된 자를 이 법이 정한 일시지원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매매된 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시설입소에 대한 명시적 거부의 사의 표현 역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여성장애인은 일단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시지원시설에서 3개월이 경과하면 중장기시설에 입소하여 최장 12월간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자유로이 재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이나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조항상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시설은 비장애인여성 성매매피해자들의 이용과 재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시설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가 어렵고, 법에서 규정하듯이 여성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재활센터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여성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편의시설의 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박영희). 여성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직업훈련이 부적절하며 독립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및 이동의 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의 입소나 이용은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특화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동법률안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자보호법률안 제14조에서는 성매매된 자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분이 면제된 자중 시설입소자를 포함한 일체의 시설이용자는 이용기간중 동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

자로 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성매매된 자 및 기타 여성의 경우 복귀할 가능성이 대부분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도 단절되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급여 지원과 노동시장 복귀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동 법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여야만 수급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이동하여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에 수용되도록 강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장애 성매매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곤궁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물론 여성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률안의 규정과는 별개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에서 동일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부여를 일반화하면서 여성장애인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의 테두리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건대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의 입소여부나 시설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매매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정착의 길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글을 맺으며

이상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성매매 근절과 관련한 2개의 법률조항의 내용을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대입하여 거칠게 살펴보았다.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방향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문별 방향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된 후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장애인성폭력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피해자 구제와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한 상담과 조사, 재활을 함께 담당할 특화된 상담소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법률상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의 책임을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소수들이 있다. 그들의 존재를 통해 다수는 우위와 편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랜세월동안 금전이란 강압에 성을 피는 소수를 '윤락녀'라 하여 또 얼마나 많은 다수는 도덕적 오만함과 정절이데올로기를 찬양하였는가. 심신을 제대로 부리기 어려운 소수를 '장애인'이라 하여 또 얼마나 많은 다수가 심신의 완전함을 찬양하며 그렇게 무례하였을 것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소수는 다시 더 소수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사회적 권한으로부터 멀리떨어져 위치하고 결국에는 권한가진 다수들로부터 외면되는 그들을 위해 나는 무언가 하여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글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끝없이 외쳐도 들리지 못할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희미한 탈출구가 되어 보려는 필자의 욕심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우리는, 소수인가 다수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이 글이 소수를 위한 글도 다수를 위한 글도 아니었기를 바란다. 오직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한 글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성매매의 피해자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여성장애인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실천적 논의의 단초가 되었기를 바란다.

단학비재하여 보다 많은 말들을 글로 옮기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루한 글을 끝까지 읽고 격려해 준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단체들과 한소리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 엄상미, 한낱 '떨이'가 되는 참 착한 여자들, 「공감」, 2003.
박영희,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공감」, 2000.
홍성희 정리, 「미국 여성과 장애 통계조사」 일부 번역분, 「공감」, 2000.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01.
장애인 여성 공감,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성폭력」
- 강릉음춘마을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00.
조영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원 육성교육 자료집」, 한소리회, 2003.
여성신문, 713호.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공 자료 등.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제안(시론)

조진경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 들어가는 말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여성장애인 문제도 다루나요?
그러기에 무슨 일을 그렇게 벌려...
할 수 있는 일만 할 것이지, 무슨 장애인 문제까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

최근 필자가 여기저기서 자주 듣는 말들이다. 사실, 최근에 와서야 성매매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극복하려 실천했던 단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먼저 고민하고 실천해왔던 우리 단체에 숱하게 많은 과제들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며 내뱉는 이 말들은 일리가 있다.

하루에도 기본 45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고, 매주 한차례 이상씩 성매매 근절에 대한 행사를 치러내고 있는 한소리회 실정에서, 장애유형의 구분조차 못하는 활동가들이 여성장

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연대를 제안하고, 연대와 함께 실천 계획을 세운다는 일이 무척 어려웠다. 4월말부터 연대를 꾸리고, 여러 차례 여성장애인 지원 단체 활동가들과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회의를 하면서, 그 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반성과 함께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느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도 필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여러 날을 악몽처럼 보내야 했다. 도대체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직 실태조사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안해도 되는 말인가!

이렇게 막막해 하던 필자에게 힘을 주고 오늘 이 자리를 열게까지 해 준 것은 바로 여성장애인 지원 단체들의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면을 통해 이들 여성장애인 지원 단체 활동가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과 의의

2-1.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제안 배경

2003년 1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서 지원한 한 사건을 통해 경기도 성남의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2명의 여성장애인을 구출했던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 사례가 너무나 잔혹하고 심각하여,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참고자료1. 참조)

이 사건을 겪으며, 필자는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장애인일 경우, 흔히 비장애 여성보다 훨씬 심한 학대와 모욕을 당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스스로 업소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이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여성장애인을 성산업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제보를 접하

면서, 더 이상 성매매 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소리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지원과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우선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우리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며,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쁜 중에서도 문제의식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기꺼이 함께 하기로 하면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었다.

2-2.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과 의의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연대는 현재, 17개 현장단체들의 연합체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재)성프란치스꼬 수녀회 헬렌의집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이 연대를 통해,

- ① 성매매 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캠페인,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 ② 긴급 구조와 상담 전화를 개설하여, 성매매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구출하고, 의료·법률 지원과 보호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 ③ 성매매 방지법안 등, 다양한 법안에서 여성장애인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안과 연구활동, 간담회, 공동행동 등을 할 것이다.
- ④ 정책제안, 공동사업개발과 실천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성매매된 피해여성들의 재활과 심리치료,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⑤ 성매매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소나 쉼터가 생길 수 있도록 공동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 연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간에 성매매 근절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형성된 최초의 연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쉽게 무성적 존재로 규정해 버리거나 또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로 쉽게 환원시켜 버리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여성장애인이 더욱 더 성적욕망 해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나 비장애나 모든 여성은 성적대상이라는 점에서 연대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 연대를 통해, 우리는 여성문제를 더욱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대를 통해, 우리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형태와 정해진 영역들을 뛰어넘어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장애인

3-1. 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삽입성교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 광범위한 성적 행위가 포함된다. 어떤 이들은 성매매는 나쁘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성매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못난 남성들(가난하거나 병자이거나 장애를 가진)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 3자적 전지적 관찰자로 위치지으면서, 자신은 성을 사지도 팔지도 않을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성매매는 힘을 가진 사람(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돈이 필요한 사람)의 성기를 사서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다. 넓은 의미의 인신매매이다.

또한 세상에는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사회적

존재이다. 문화와 전통, 사회적 편견에 영향받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간다. 따라서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라면, 그 사람의 시선은 다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지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뿐이다.

성을 사는 자와 성을 파는 자를 단순히 이분화 시켜, 성을 사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좋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성을 팔아 돈을 얻어서 좋다는 시장의 원리로 성매매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원 장치라고 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사람이 존엄하다는 간단한 진리마저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성매매 공간은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며, 힘을 가진 자(돈을 가진 자)의 욕망과 성적 환타지에 의해 힘이 없는 자(돈이 필요한 자)가 사용되고 조작되는 공간이다. 힘이 없는 자는 철저하게 대상화되고, 욕망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그 안에는 갖가지 모욕과 학대, 폭력이 난무하다. 성폭력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면, 돈이 필요해 성행위를 해야하는 자들은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다.

3-2. 한국 성매매 산업의 실태

① 유입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되고 있는 여성들은 많은 경우, 빈곤이나 가정폭력, 가정해체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가출하여 방황하다 전단지와 신문광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다. 최근에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있었던 정리해고로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향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확산 유도 정책으로 인한 신용카드 남발과 현금 서비스 남용은 젊은 여성들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심화시켰다.

② 직업소개소

과연 한국의 수많은 직업소개소 중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기고 있지 않은 직업소개소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성매매된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들어간다.(보통 여성들은 직업소개소를 탄다고 말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혼자서 업소를 옮겨 다니지 않는다. 혼히 삼촌이라고 불리는 직업소개소 소개인은

업소들의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의 상품 질이나 계약기간에 따라 100-3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다. 소개비는 업주가 직업소개인에게 주지만, 업주는 다시 고스란히 여성의 빚으로 올린다. 성산업에 유입되어 오랫동안 성매매된 여성의 경우, 직업소개인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소개인은 빚을 지고 있는 여성의 빚을 갚아주고, 다른 업소에서 소개비와 여성의 빚을 포함하여 그 여성이 전에 가지고 있던 빚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받아서 자신이 소유한다. 결국 여성은 빚 때문에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점점 불어나는 빚으로 소개인에게 묶여서 업소를 전전하며,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여성의 경우 소개인이 의도적으로 여성을 여러 업소에 옮겨다니게 하면서 자신은 소개비를 챙기고,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위반하게 하여 위약금까지 빚으로 물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③ 업소형태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주점, 유리방, 노래방, 관광호텔내 스포츠 마사지, 이발소, 다방, 전화방, 여관, 일반 음식점, 출장 요리사 등 강남지역의 고급 업소에서 농촌의 일반 음식점까지 업소의 형태는 다양하고 성매매 형태도 무궁무진하다.

④ 일

보통 여성들은 오후 4시경에 일어나서 영업을 준비하고 오후 7시경부터 업소에 나온다. 업소형태에 따라 일의 형태는 다르지만, 유리방의 경우, 보통 빚이 2,000-3,000만원 이상일 경우, 하루에 15명이상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보통 그 곳에서는 빚을 갚는다는 말을 빚을 갚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도 하루에 15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365일 매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업은 보통 아침 7시경에 끝난다. 빚을 까기 위해서 많은 남성 구매자와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여성은 남성 구매자를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 한다. 계산은 업주가 장부에 여성의 성매매 횟수를 기록하고 1주에 한 번이나 1달에 한 번씩 여성들과 맞춘다. 그러나 이 경우 여성들의 계산과 업주의 계산이 많이 틀리고 일방적으로 업주의 계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아예 기록조차 않는 경우가 많다. 도망 나오거나 구조를 했을 때, 도움을 주려하지만, 증거가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업주는

여성과 계산이 끝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를 찢어버린다.

⑤ 선불금과 빚

돈이 필요해 업소 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은 필요한 액수의 돈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데,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는 여성에게 필요한 돈을 미리 준다.(선불금이 있다는 사실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누가 모르는 여성에게 그 큰 돈을 선불로 주겠는가.) 선불금을 받은 여성은 업주와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의 내용에는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심지어 금액조차 쓰지 않은 채 차용증에 서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불금은 3달 기간으로 선이자를 포함하여 일수로 5부 이상의 이자를 갚게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갚지 못한 이자와 다음 3개월의 선이자를 포함하여 갚도록 한다. 여성들은 빚을 갚으려 남성 구매자와 아무리 많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결코 이자도 갚지 못하고,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 선불금은 업주가 여성들을 감금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불을 당기지 않을 경우, 업주는 방을 꾸미라는 등, 옷을 해 입으라는 등, 시계나 그밖의 장신구를 사라면서 무조건 빚을 지게 한다. 최근에는 여성단체 개입으로 선불금 빚 무효가 빈번해 지자, 업주들은 선불금을 당겨쓰게 하고, 차용증을 쓰면서 공증을 받게 하거나, 제 3자의 사채를 빌리게 하거나, 은행이나 정식 금융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또한 빚이 많은 여성들의 도주를 막기위해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같은 소개소를 끼고 있는 서로 모르는 여성들을 묶어서 연대 보증을 서게 하여 여성들의 도주를 차단하고 있다.

⑥ 벌금

여성들은 업소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내게 돼있다. 방세 60-80만원, 식대, 빨래비, 마담용돈, 사장 등 생일선물비, 남성 구매자용 선물비, 난방용 기름값 휴지, 커피 등 생필품값, 심지어 콘돔비까지 여성들이 낸다. 빚이 있는 경우, 최소한 1달에 1번 쉬는 여성들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이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해야 했다. 1일 최근시 벌금 50-100만원, 지각비 1분당 1만원이다.

⑦ 병

자발이던, 비자발이던 성매매된 여성들은 성병 등 각종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여, 알코올

중독, 알물중독, 위장염, 간기능 장애,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많은 여성들에게서 자해한 혼적을 발견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구매자에 의해 폭행당해본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3-3. 여성장애인과 성매매 현장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업소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럴 수가? 하는 반응을 보이며, 장애인까지 성매매 업소에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한테 그 짓을 하고 싶어할까?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매매 산업의 천국인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리지 않는다.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은 그저 '구멍'일 뿐이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다는 점은 새삼스럽게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최근 성매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 20조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무효 조항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알려지거나 지원단체들의 존재를 알게되면서 많은 비장애 여성들이 탈출하거나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 상황에서 업주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고, 말 잘듣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장애인은 업소에서 숨겨져 있거나 지체장애인일 경우, 항상 의자에 앉아있게 하거나 해서, 경찰이 수시로 업소점검을 나왔을 때도,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거나, 알아도 업주의 뇌물로 묵인하게 한다. 정신지체일 경우, 종업원 명부에 올리지도 않아, 이 경우, 이 여성의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성매매 집결지역의 경우, 구청에 여성 종업원의 명단을 기록하게 한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된 상황에 대해 확보된 사례가 별로 없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실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한계에서도 우선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① 유입

여성장애인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이유도 비장애 여성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빈곤, 가정폭력, 가족해체, 차별, 학대, 학교내 왕따 경험 등으로 가출하여 어렸을 때부터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우와 결혼 후 이혼한 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입된 후 대부분 나갈 곳이나(이미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 재취업할 곳이 없어서, 한번 유입되면, 스스로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지체장애일 경우, 중증장애는 아니었지만, 성매매된 여성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으며, 업주 역시, 여성장애인의 불쌍해서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데 자신이 고용했다는 식으로, 도리어 자신의 행동이 선행이었음을 알리고 싶어했다. 나이가 든 지체장애 여성의 경우, 과도한 성행위로 인해,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한 후, 빛 때문에 계속 성매매를 해야했지만, 본인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신고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몸에 이상이 없었더라면, 결코 성매매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오랜 성매매 생활에서도 갚을 빚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받아나올 돈이 있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여성에 대해 업주는 도망을 가거나 할 위험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는 느낌이었다. 한번 유입되면 결코 스스로 도망나오거나 그만둘 수 없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밖에 없다. 따라서 성매매 근절 여성장애인 연대에서는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현장에 있는 것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② 장애유형

지체장애와 정신지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과 심한 당뇨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 안마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어려워 실태파악이 전혀 안돼있다.

③ 일

성매매 업소의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 여성과 똑같은 형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지만, 비장애 여성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른 업소로 옮기기 어려운 점, 도망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많은 남성 구매자를 받아야 하며, 다른 여성들이 꺼리는 구매자들도 쉽게 여성장애인의 몫이 된다. 선불금, 빚, 직업소개소 등은 비장애 여성과 같다.

④ 폭력과 구타·학대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업소에 유입됐을 경우, 대부분 심한 폭력과 구타가 있었고, 심각한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업소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이 되었다. 행동이 느리다는 점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 당했고, 여성장애인의 불안한 사회적 위치와 열악한 처지 때문에 당해도 대항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심해지는 폭행과 구타, 심지어 분뇨를 먹이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학대가 있었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학대도 심하다.(한 여성의 경우, 관계 중에 목을 비틀어 목 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관계 중 희한한 체위를 강요당하다 심하게 허리를 다친 경우가 있었다.) 성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제대로 안해줬으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으며, 업소 종업원 명부에도 올리지 않았던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업소에서 구타와 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밥을 짖기고,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업소안의 청소 등 허드렛일을 맡아 해야 했다. 무시와 언어폭력 등은 수시로 자행된다.

폐쇄적인 성매매 업소의 특성상, 여성장애인의 성산업에 유입될 경우,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폭력과 구타·학대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성매매 산업에서 구출시켜야 한다.

⑤ 여성장애인과 비장애 여성과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여성장애인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었으며, 구타나 폭력은 업주나 마담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비장애 여성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 분노와 미움의 분풀이 대상이 된다. 또한 나이가 들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경우, 2차는 강요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당연히 해야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업주는 이 여성에 대해 2차 강요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때, 함께 일하던 비장애 여성들에게 미움을 사고, 비장애 여성들이 2차 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업소에서 구출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⑥ 성매매 업소 밖의 여성장애인 성매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지역사회안에서 지속적으로 여려명의 남성들에 의해 반복적

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 경우, 처음에는 강간의 형태로 시작되지만, 긴시간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면서, 가해자들에 의해 돈이 지불되는 경우와 여성장애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명백한 성매매이다.
그 외, 최근 채팅이나 전화방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도 확대되고 있다.

3-4. 성매매된 여성장애인의 구출 이후

- ① 성산업에 유입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은 우선 법률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보통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면, 이 여성은 아마 성산업에 유입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여성주변에는 지원하는 가족이나 사회적 지원체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지체장애인일 경우, 가시적으로 장애가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증을 소지하지 않은 정신지체일 경우, 장애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시 자신의 경험과 피해에 대해 진술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성매매 업소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비장애 여성일지라도 업소안에서 장기간 성매매되었다면, 대부분 정보의 차단과 단순 일과의 반복으로 지능의 퇴행이 일어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신지체 여성일 경우,(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그 여성이 장애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이점은 성남 사건의 경우에, 같은 업소에 있었던 여성들이 정신지체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착한 애가 있다는 정도로 표현한 점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현재 성매매 업소내에 정신지체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② 구출 이후, 법률적 의료적 도움과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쉼터가 전무하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전혀 없는 점에서, 구출 이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들의 보호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있는 점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 ③ 성매매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른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한 준비돼

있는 재활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없다.

- ④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직업 등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4-1.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성매매된 여성들은 성산업에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성산업에 유입된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기 보다, 사회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사회적 가치, 이미 존재해 있는 성산업 구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한소리회를 찾아와 털어놓는 자신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 가출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담원들은 이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게 된 첫 원인인 가출을 모두 잘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가출할 이유가 충분했다.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소녀들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직업은 없었다. 오직 어릴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성산업만이 이들을 필요로 하고, 갈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훌륭 넘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는 집나와서 갈 곳이 없는 소녀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무 검색엔진에서 유통업소라는 단어를 입력해보라.) 소녀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이 일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들은 꼭 세 달만 일을 해주면, 얻게 될 돈이 1,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광고에서는 숙식제공, 초보자 환영, 월수 300이상이라는 말이 어디나 들어있다.) 이 일을 시작하지만, 그녀들이 얻는 것이라고는 병과 파괴된 자존감과 사회적 지탄, 그리고 빚뿐이다. 업주들은 여성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목표도 오직 돈이다. 그녀들은 업주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이다. 업주들은 그녀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그녀들이 능력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오랫동안 이 업소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업주는 여성들이 구매자들과 술을 같이 마시고, 몸을 팔면서, 벌어들이는 돈에서 50% 이상을 떼서 갖고, 여성들에게 준 선불금에서 이자를 받고 결근비, 지각비, 방세, 세탁비 등 온갖 벌금을 만들어 돈을 벌기 때문이다. 빚을 진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주들은 돈을 번다. 돈이 벌리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회에 유흥업소가 번창하는 이유는 돈이 벌리기 때문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길만 남았다. 공급은 수요를 부르고, 수요는 공급을 낳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많아지면 성매매되는 여성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성 구매자도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성구매자는 여성들의 성을 돈으로 사지만, 아무도 영수증을 떳떳하게 끊지 않는다. 그녀들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다른 업종의 영수증으로 대치된다. 경제가 음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 음성화된 돈은 다시 경찰이나 정계의 실력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인다. 성산업의 활성화는 성매매된 여성만 비인간화시킬 뿐 아니라, 성구매자인 남성의 삶도, 또한 국가 경제의 건강성이나 도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산업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 성매매된 여성, 성을 사는 남성, 진짜 포주, 업소의 관리인인 바지사장, 성매매된 여성들을 관리하는 마담, 여성들을 감시하는 어깨(삼촌이라고 불림), 소개 업자, 업소의 실제 집 주인, 약국, 웃가게, 미용실, 목욕탕, PC방, 전화업체, 식당, 포장마차, 주류업체, 유통회사, 택시 기사 등의 성매매 업소를 둘러싼 상권, 호객꾼들이 있다. 이들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성들밖에 없다. 나머지는 이 여성을 이용하여 욕구를 채우고,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누가 성산업에서 성을 파는 여성이 되고 싶어할까? 아무도 없다. 다만 가난하고, 상처받고, 삶을 포기한 여성들이 오게될 뿐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재화를 생산해 낸다.

어떤 사람들은 성산업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성노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들과 성을 파는 여성들이 정말 동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노

동자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물과 성을 파는 여성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물을 비교하고, 그 노동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여성들이 성노동을 통해 기대하는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동일한지, 사회적 시각이 동일한지를 비교해 보자.

필자는 성산업에서는 성을 파는 노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노예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누군가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한다면, 필자는 차라리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산업에 유입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 자발이나, 강요나를 물어서는 안된다.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은 열악한 사회구조적인 위치와 빈곤 때문에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어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여성이 성에 몰두하고 성적 유혹을 하는 성향이 보인다면, 이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과거의 경험에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한 경험이 학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으로 반드시 피해자로 보아야 하며,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는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5.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천

필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은 여성장애인의 안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매매 근절운동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장애인의 성산업 유입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사회구조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현재 여성장애인 운동의 이슈와 과제(제 3기 여성장애인 인권 아카데미, “여성장애인 운동과 과제”, 이예자, pp12-15)를 소개한다.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각종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한 법과 제도의 마련

여성장애인의 특수성과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과제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해 유의미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분석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여성장애 관련 기관을 통한 조사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관련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경험, 관심,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의 힘권 강화

여성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을 가져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캠페인, 시위, 조직구성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여성장애인 지도력 개발과 세력화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5)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에 맞서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이루는 수단인 직업을 가질 권리가 가지며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생활주기에 알맞은 건강권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전문 의료인이 확보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각종 정보, 건강관리체계구축, 복합적인 의료서비스, 상담, 기혼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당연한 권리로써 인정되도록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9) 여성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0) 여성장애인의 정보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정보접근 실태를 개선하고 정보이용 기회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폭력에 대한 인지,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지역 사회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12)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적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성적 경험 드러내기와 나누기, 자조모임 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사회 이슈화시키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교육 등 지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확보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 장애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성장애인 지위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의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의 활동

5-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성매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2중적 기준과 성매매 유입을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성산업은 확대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나쁘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을 자발과 비자

발로 구분하여 보호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매매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성매매 근절은 전 국민이 나설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의식과 문화, 가부장제 사회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성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남성사회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 없애기,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상징 만들기, 군대문화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지지,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에서 여성의 힘 갖기 를 위해 많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이다.(전문상담원 교육, 현장 활동가 육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5-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1995년경 쌍별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에는 법 제정을 위한 법철학이 선행하는데, 이법의 철학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수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한곳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일 뿐이었다. 강력한 금지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매매를 줄일 수 없었고, 결국 실효성을 상실한 법은 사문화 될 뿐이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이 전제되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논란 끝에 윤방법 개정을 포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배숙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금지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알선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과 내부 고발제를 두고 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성매매 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과 대

국회 투쟁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5.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150여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돋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잘 모른다. 각 단체들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단체에 대한 홍보와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 법률단, 의료단 등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필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전국 연계망 구축사업, 활동가 대회, 지역 사회 간담회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5.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완전히 탈성매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자주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 수혈과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자가 또 다시 다쳐 입원했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희생당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된 여성의 긴급 구조를 통해 탈성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화와 이 여성의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6. 나오는 말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문제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지만, 우리는 선정적인 호기심으로, 인정하기 싫은 현실처럼,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이한 사건으로 그저 그렇게 지나쳐 왔다. 그러나 2003년,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로보려 한다. 한국 성산업의 내수시장이 확산되자, 기지촌의 성산업이 축소되었다.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갈 많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내수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자 기지촌의 성산업은 가난한 동남아시아 젊은 여성들과 패망한 구소련의 젊은 러시아 여성들로 채워졌다. 여성부의 출범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여성단체들의 응집된 힘과 실천에 의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여성도 희생되지 않을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성매매 근절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성산업 구조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점없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매매 근절에 대한 방안은 비장애 여성들이 나간 자리를 여성장애인에게 메우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연대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다. 특히 본고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없이 빈약한 자료들, 젊은 경험들로 형편없는 글이 돼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첫 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인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본다. 우선 성매매 현장에 대해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본고를 마친다.

참고자료1. 성매매 집결지에서 구출된 여성장애인의 사례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소식지 2003년 창간준비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성남 중동 사건에 대하여..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 있었던 긴급구조 지원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 3인을 구출하였습니다. 피해 여성 3인 중 2명은 여성장애인입니다. 본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게 된 여성장애인 성매매 현실에 대해 알리고, 대책 마련과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장애인 고용 근절을 위해 현재 장애 여성 지원단체와 공동 대책위 구성을 준비중입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 1월 22일 한소리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이 성남의 어느 업소에 있는데 성매매 하러 온 상대 남성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딸을 찾아달라는 전화였다. 우리는 성남에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여경에게 전화를 했고, 경찰에서는 업소 이름을 모르고 찾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다음 날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업소 내에 심각한 구타와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그 중 한 여성이 훨씬 심하게 학대당했는데, 그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의 경찰서로 달려갔고, 피해여성을 확인해 본 결과 왼쪽 팔과 다리를 못쓰는 신체 장애인이었다. 장애 여성의 몸은 온통 불에 던 흉터와 멍이었다. 경찰 쪽에서는 증거물로 상처 사진을 찍었고, 마담은 구속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애 여성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는 본인이 자해한 것이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생긴 멍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 장애 여성은 업소에서 성매매는 없었고, 마담과 시장은 자기에게 너무 잘해줬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 그러기를 하루 종일을 하였다. 이 장애 여성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 여성은 경찰을 믿을 수 없었고, 여기서 잘못말했다가, 다시 업소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여성은 더욱 심한 학대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무서워

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업주들은 자신들이 경찰과 매우 가깝다고 여성들에게 계속 주입시킨다. 사실, 경찰들이 업소에 와서 업주에게 돈 받고, 여성들한테 성상납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이 여성은 경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 처음 우리에게 의뢰가 왔던 딸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고, 업주는 빛 포기 각서를 쓰고, 딸은 우리들의 보호하에 경찰서를 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장애인 여성에게 작은 소리로, 너도 나가고 싶지? 니가 있는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나갈 수 있어... 너 갈데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갈데는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듣는 둥 미는 둥 했다. 결국 경찰은 이 여성장애인의 사실 진술에 대해 포기하고, 딸과 대질 심문을 하는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대질 심문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마담이 한 행동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는 어이가 없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소에는 7명의 아가씨가 성매매되고 있었다. 마담의 역할은 이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아가씨들이 도망을 하거나 업소에서 영업을 못하면, 그 책임이 마담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마담은 여성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집단에서 한 사람을 왕따 시키면서, 결속력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행동이 느리고, 둔하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들에게 함께 벌을 주고, 벌받는 원인이 장애인 여성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모두 이 장애 여성은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7명 여성들 중에서 빠릿빠릿한 여성 하나를 데려다, 라이터로 몸을 지지게 시키고, 젓가락을 불에 달궈서 몸에 대게 하고, 강제로 머리를 자르게 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 장애 여성이 다른 날처럼, 남성과 관계하면서, 다른 여성들보다 늦게 끝냈다고, 벌을 줬는데, 왼쪽 손, 발이 불편한 여성을 무릎꿇고, 손들고 있게 했다. 30분이 지났고, 이 여성은 도저히 벌을 못서겠다고 하니까, 마담이 오줌물을 먹을래, 아니면 계속 무릎을 꿇고 손들고 있을래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여성은 도저히 계속 벌을 서고 있을 수 없어서, 오줌물을 먹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여성들 중 한명에게 시켜, 오줌물을 펴오게 했다. 장애 여성은 그 오줌물을 마셨는데... 마시다가 구토를 했더니, 그 위에 다시 오줌물을 펴오게 해서, 4번을 더 마시게 했다. 그러자 갑자기 마담이 배가 아프다고 나가더니, 설사똥을 담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시켰다. 이 여성은 그것까지 먹어야 했다. 그리고 계속 이 일을 3-4회 더 반복시켰다. 사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을 당한 여성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마담과 사장이 자신에게 잘 대해 줬다고 진술을 하고, 자신을 돋고자 하는 딸에게는 옥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지... 이 여성의 너무 불쌍했다. 결국, 우리는 이 여성의 설득시켜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이 장애 여성은 5개월동안 성매매를 300여회 했다고 한다.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이 사건을 처리했던 성남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선생님이 이 여성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이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업소에 또 한명의 정신장애인 의심되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다음날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 그 업소로 돌아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한 여성의 딸을 데리고 나왔다. 다시 조사가 시작되고, 학대의 흔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 신체적 상처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와 같았고, 이 여성도 자신이 학대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 여성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만한 수준이 안되었고, 사고를 할 만한 인지능력이 없는 정신 장애인이었다. 결국 이 여성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고, 건강검진과 의복을 지원하고, 안전한 쉼터로 이 여성들을 보냈다. 현재 장애가 있는 두 여성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곳 쉼터에서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처음 우리에게 의뢰가 들어온 그 남자의 딸은 우리와 함께 또 다른 희생자를 돋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지면을 통해 이 사건에 도움을 주셨던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성남 주민교회, 쉼터에 감사 드린다.

성명서

2003년 1월 성남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구출된 여성장애인 2인의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여성장애인들의 성매매 유입에 대해 침묵할 수 없게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지체장애인 여성과 정신지체여성이었으며, 경찰조사에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업소내의 비인간적인 폭력과 학대가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피해경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과 차별에 견디지 못하고 성매매에 유입되어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장애인등록이나 종업원 명부기록이 제대로 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장애인의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울만큼 철저히 은폐되어있다.

여성장애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버려진 채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경우 업주가 아무리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을 받아주고 고용시켜준' 업주와 그 공간을 벗어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장애인도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여성장애인 스스로 성매매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한소리회를 비롯한 여성장애인관련 단체와 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본 연대는 앞으로 여성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02-364-8297)'를 설치하여 위기에 처한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위기개입을 할 것이다. 또,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제안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문제가 여성운동내에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모든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매매 문제가 특수한 어떤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처해있는 사회현실에서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사회적으로 조장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해나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법안내의 여성장애인 특화조항 삽입,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확대,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제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성장애인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처한 특수한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성매매가 만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후퇴되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여성,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연대를 제안하며, 국가적 책임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여성장애인 전문 성매매 상담소 설치하고 피해여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라!
2. 성매매방지법안 내에 여성장애인의 특화조항을 구체화하라!
3.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생존권을 확보해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
4.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2003년 8월 27일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 참가자 일동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단체소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산업에 유입된 많은 여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빚과 보이지 않는 감금,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탈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법률, 의료, 쉼터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Tel.02)312-7245 홈페이지-<http://han-sori.org> 메일-uvep@chol.net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 땅에서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를 찾고 누리며 평등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입니다.

Tel.02-3675-9935 홈페이지-<http://www.kdawu.org>

■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장애인이란 사회적 편견과 여성이라는 불평등한 이중차별속의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장애여성들에게는 법률적인 지원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들의 성적인 권리와 건강한 성의식을 심어주며, 양성평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Tel.031-755-2526~7 메일-withus3663@hanmail.net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이 땅에서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를 찾고 누리며 평등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입니다.

Tel.02-3675-4465 메일 : kdawu@hanmir.com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3675-4465-6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3-654-1366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3-274-9414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5-241-5041
성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52-3663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1-583-7735
전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286-1366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2-676-2305
공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441-2384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041-541-1514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위기개입과 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고 더불어 성폭력피해방지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장애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편견과 신화들을 바꾸어나가고자 합니다.

Tel.02-3013-1367 홈페이지-<http://www.wde.or.kr> 메일-was@was.or.kr

■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장애인이라는 사회편견과 여성이라는 불평등한 이중차별 속의 여성장애인에게 상담활동을 통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Tel.041-541-1514~5 홈페이지-<http://www.asvcc.or.kr> 메일-heejae5@hanmail.net

■(재)성프란치스꼬 수녀회 헬렌의집

성폭력 피해여성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상담과 개입을 통하여 피해자를 돋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을 준다.
의식주 제공/상담지원(개인상담, 집단상담)/법률적 지원/프로그램실시(성교육, 학습지도, 자조모임, ADL 훈련, 명상치료 등)/직업재활훈련

Tel.02-830-8807 메일-yoo-fmm@hanmail.net

